

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5~33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5. 6.
제출자	거창군수

개정이유

-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『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』·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5. 2.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
- 위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 규정에 의거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될 제증명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(안 별표1).

개정근거

- 『지방자치법』 제128조 및 제130조
- 『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』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”를 “「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」”로 한다.

[별표1] 구분·기준·요액 및 비고란중 7.부동산에 관한 사항에 (6) 및 (7)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단위 : 원)

구분	기준	요액	비고
7.부동산에 관한 사항			
.....			
(6) 개별주택가격 확인	1호	1,000	동일호 공시일자별 추가분 200
(7) 공동주택가격 확인	1호	1,000	동일호 공시일자별 추가분 200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(단위:원)

현 행				개 정 안			
7.부동산에 관한 사항				7.부동산에 관한 사항			
(1) ~ (5) (생략)				(1) ~ (5) (현행과 같음)			
구 분	기준	요액	비고	구 분	기준	요액	비고
		<u><신 설></u>		(6) 개별주택 가격확인	1호	<u>1,000</u>	동일호 공시일자별 추가분 <u>200원</u>
		<u><신 설></u>		(7) 공동주택 가격확인	1호	<u>1,000</u>	동일호 공시일자별 추가분: <u>200원</u>